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5

제안연월일 : 2022. 11.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됨
- 직접 수행시 석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며, 사업량 및 사업범위 증가에 따라 행정력 과다 소요
- 지속성을 가진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 가능

2. 위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3.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나. 위탁기간 : 2023년 ~ 2025년(3년간)

다. 사 업 량 : 주택 126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29동['23년 기준]

라. 사 업 비 : 841,640천원/년(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마. 위탁비용 : 67,300천원/년(사업비의 8%)

바. 위탁사무 내용

-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체결(공개경쟁입찰)
- 슬레이트,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제출

사. 수탁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로,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4. 추진실적

(사업량→동, 사업비→백만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 ,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사업량	312	77	61	124	10	24	117	28	20	71	39	17
사업비	1,101	222	256	388	33	88	415	58	81	298	131	87

5. 위탁에 따른 경제성 검토(2022년 처리실적 기준 비교)

- '22년 철거물량에 위탁 단가 적용 시 발생비용 약 4백만원 감소
 - 자체 단가 : 면적조사/철거(20,309원/m), 처리(8,013원/m), 지붕개량(62,689원/m)
 - 위탁 단가 : 면적조사/철거/처리(25,400원/m), 지붕개량(65,400원/m), 수수료 8%

※ 위탁시 수수료가 발생하나, 면적조사 용역 비용 감소로 전체 사업비 절감 (단위: 백만원)

구분	① 자체(현행)	② 위탁(계획안)	비고(②-①)	
면적조사 및 철거비	306.17	382.93	감) 45.4	
처리비	122.16	302.93		
지붕개량비	87.42	91.20	증) 3.78	
수수료	_	37.93	증) 37.93	
합계	515.75	512.06	감) 3.69	

6. 타지자체 위탁현황

○ 도내 11개(61%) 시·군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

위탁(11개 시·군)	자체(7개 시·군)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평창군, 춘천시,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위탁예정), 화천군, 고성군

7. 추진계획

○ 2022. 11월 : 민간위탁사업 의회 승인

○ 2023. 2월 : 민간위탁 수탁사업자 모집 공고

○ 2023. 3월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 2023.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 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 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 간위탁 할 수 있다.
 -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